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333
----------	-----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8일

발 의 자 남진삼 의원

찬 성 자 박춘희, 김광성, 이은미의원

## 1. 제안이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관련)

나.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 마련의 준수 책무(안 제3조 관련)

다.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안 제4조 관련)

라.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안 제5조 관련)

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안 제6조 관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불입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 9. 19. ~ 10. 8.(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9. 6. ~ 9. 13. 아래표 참조.

조례안(원안)	집행부 의견(건강증진과)	검토결과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맨발걷기길”이란 도시공원 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맨발걷기길”이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사유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에 명시된 것과 같이 건강증진과 힐링이 될 수 있는 불특정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조에서 도시공원 내라고 특정할 이유가 없음.)</p>	<p>(부분수용)</p> <p>안제6조제2항과 관련 활성화 사업 실시에 대해 ‘<u>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한다.</u>’를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은 문맥의 내용이 모호하고, 조성사업 주체를 부지담당부서에 한정 짓는 것으로 활성화 사업 주체를 한정하여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p>
<p>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②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는 공원관리 사업 부서, 읍·면, 군민건강증진 사업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p>	<p>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②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으며, <u>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한다.</u> (사유 - 업무구분 명확화)</p>	<p>안제6조제2항 주관부서와 공원관리 사업부서, 건강증진 사업부서의 협력내용과도 연결이 어려움</p> <p><u>조례안 전체에 대한 의견인 맨발 걷기운동의 부작용에 대한 사안은</u></p>
<p>조례안 전체</p>	<p>맨발 걷기운동은 운동 효과가 일정 부분 있으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많은 평창군은 맨발걷기에 따른 부상 및 감염 위험, 근골격계 부담 등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음.</p>	<p>모든 운동에는 실과 득이 있듯이 사업 시행과 함께 맨발걷기 시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에도 신경써야 할 것임</p>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맨발걷기길”이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
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②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

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
3.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쉼터 등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관리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는 공원 관리 사업 부서, 읍·면, 군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제4조및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제4조및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제4조및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

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제4조및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제4조및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제4조및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
3.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쉼터 등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관리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
연락처	(033) 330 -2809